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1가단52799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평

담당변호사 하상우

피고(선정당사자) 5. F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65,11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1. 4. 주식회사 G에 107,250,000원 상당의 마스크필터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102,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349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2,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5. 15.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21. 6. 3. 의왕시 H건물, I호에 있는 별지2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 및 위 H건물, J호, J호, K호에 있는 별지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L, 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합계 61,065,1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11384호로 소외 회사 소유인 마스크 완제품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1. 8. 2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들, 선정자 M, N, O, P은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 각 임금채권을 가진 우선변제청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요구 금액(원)		배당요구 금액(원)
피고 B	5,267,950	선정자 M	3,274,346
피고 C	3,618,950	선정자 N	3,577,015
피고 D	3,717,105	선정자 O	3,786,480
피고 E	3,749,420	선정자 P	3,624,030

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22. 2.경 압류된 소외 회사 소유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었던 자들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2021. 6. 및 2021. 7.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지2, 3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무잉여압류금지원칙에 따라 취소되었는데, 선정자 Q, R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나머지 선정자 및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는 2021. 6. 임금채권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인바,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065,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올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 S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정자 Q, R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선정자 Q, R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이 2021. 6.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허위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청 당시에는 2021. 6.분 및 2021. 7.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2021. 9.경 이후에 2021. 6.분 임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 선정자 M, N, O, P은 2021. 7.분 이후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위 피고들 등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정자 Q, R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선정자 Q, R이 허위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정자 Q, R과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방해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소외 회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거나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상은

별지